

1. 개정이유

2012년부터 철도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적정 수행 여부 점검, 철도현장 시설관리실태 등의 안전 점검 및 사고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나,

철도안전감독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간 마련한 책임감독관제 도입 및 직무교육 정례화 등을 이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장애 책임 대응을 위한 '책임감독관'의 용어를 정의(안 제3조)하고, 책임감독관의 주요 업무를 규정(안 제7조)

나. 감독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1회 20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안 제5조)

다. 감독관별 처분 수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처분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안 제9조·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철도안전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감독관은 최초 임명 또는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운전교육훈련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훈련기관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고 현장 감독관의 지휘
2. 사고 조사·복구·수습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

과의 협의

3. 사후 보고서 작성

제9조제2항제5호 중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필요”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처분심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 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직무교육 훈련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3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책임감독관'이란 제7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철도사고 현장 안전조치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감독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을 말한다.</u></p>
<p>제5조(감독관의 교육·훈련)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5조(감독관의 교육·훈련)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감독관은 최초 임명 또는 직무교육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 1회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u></p> <p><u>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운전교육훈련기관</u></p> <p><u>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훈련기관</u></p>
<p>제7조(감독관 업무) ①·② (생략)</p> <p><u><신설></u></p>	<p>제7조(감독관 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책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u></p>

제9조(특별점검) ① (생략)

② 기획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훈련의 적정 시행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
7. (생략)

③ (생략)

<신설>

1. 사고 현장 감독관의 지휘
2. 사고 조사·복구·수습 등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사후 보고서 작성

제9조(특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필요한 -----

6. -----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처분심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의 처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3조제2호에 따른 처분 등급의 결정 등을 위한 처분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상시점검 및 특별점검 후 개최

제15조(시정조치) ① (생략)

② 감독관은 현장에서 시급하게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7조(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

① 감독관은 시정조치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업무수행결과 기록유지)

① -----
---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재검토 기한) -----

----- 2023년 7월 1일 -----
-----6월 30일-----

-----.